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74

발의연월일: 2021. 8. 17.

발 의 자:고용진・박성준・김주영

윤관석 · 김진표 · 김수흥

이원욱 • 양향자 • 윤후덕

이용호 · 윤준병 · 용혜인

변재일 · 김경만 · 양정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4조, 제48조, 제62조 및 제66조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예금 또는 유가증권"을 "예금, 유가증권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각각 "동산등"으로 한다.

1. 동산, 유가증권 또는 가상자산(이하 "동산등"이라 한다)

제3장제2절제5관의 제목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압류"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압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각각 "동산등"으로 한다.

제62조제4항 본문 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을 "동산, 유가증권 또는 가상자산 등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동산 또는 유 가증권 등"을 "동산, 유가증권 또는 가상자산 등"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을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를 "상장된 증권이거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시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산자산사업자를 통하 여"로 한다.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부터 제4호"를 "제2호부터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상자산

제72조제1항제6호 중 "동산·유가증권인"을 "동산등인"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호나목 중 "동산·유가증권인"을 "동산등인"으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동산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을 "동산등인"으로 한다.
제94조제2호 중 "채권·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을 "채권·유가증권 ·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 ④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5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	
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	
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	
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	2 <u>예</u>
금 또는 유가증권	금, 유가증권 또는 「특정 금
	용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
	자산"이라 한다)
제34조(압류조서) ① (생 략)	제34조(압류조서) ① (현행과 같
	으)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	
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 2. · 3. (생략)
- ③ (생 략)
- ④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u>동산 또는 유가증권</u>을 압류한 경우 그 <u>동산 또는 유가증</u> 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 ⑤ (생략)

제5관 <u>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u> 제48조<u>(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u>

- ① <u>동산 또는 유가증권</u>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u>동산</u>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u>동산</u>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u>동산 또는 유가증권</u>을 인도하 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1. 궁산, 휴가능선 또는 가상사
산(이하 "동산등"이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동산등</u>
<u>동산등</u>
⑤ (현행과 같음)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압
<u>류)</u> ① <u>동산등</u>
②
동산
<u> </u>
<u>동산등</u>
③
<u>동산등</u>

- 에 따라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u>동산</u>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압류할 수 있다.
-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 ③ (생 략)
 - ④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다만,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⑤ ~ ⑦ (생 략)
 - ⑧ 선행압류기관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점유하고

④
<u>동산</u>
<u> </u>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동산</u> , 유가증권 또
<u></u> 는 가상자산 등인
· ⑤ ~ ⑦ (현행과 같음)
8
<u>o</u>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u>동산 또는 유가증권</u> 등 압류재산을 제5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기업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 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 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u>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u> 직접 매각할 수 있다.

<u>동산, 유가증권 또는</u>
<u> 가상자산 등</u>
제66조(공매) ①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
권, 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권
②
<u>상장된 증</u>
권이거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시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
산자산사업자를 통하여

- ③·④ (생 략) 제71조(공매보증) ①·② (생 략)
 -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 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4.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 제72조(공매공고) ① 관할 세무서 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 다.
 - 1. ~ 5. (생략)
 -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u>동산·유가</u> <u>증권인</u>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배우 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 다는 사실
 - 7. ~ 13. (생략)
 - ② ~ ⑦ (생 략)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

(3) • (4) (현행과 같음)
제71조(공매보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호부터 제5호</u>
1. ~ 4. (현행과 같음)
<u>5. 가상자산</u>
④·⑤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매공고) ①
<u>.</u>
1. ~ 5. (현행과 같음)
6
<u>동산등인</u> -

장-	은	제72:	조제1형	하 5	및 제:	2항에
叫:	른	공매금	공고를	한	경우	즉시
ユ	내	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
게	통	지하여	여야 현	<u></u> .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생략)

-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동산·유가증권인 경우:배우자
- 4. (생략)
- ② (생략)
- 제76조(배분요구 등) ① ~ ③ (생 략)
 - ④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 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 한 부부공유의 <u>동산 또는 유가</u> <u>증권</u>인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⑤ ~ ⑧ (생 략)
- 제79조(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 수권) ① (생 략)
 -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 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u>동산등인</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배분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동산등</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 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한 부부공유의 <u>동산 또는 유가</u> <u>증권인</u>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 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 1. (생략)
 - 2. <u>채권·유가증권 그 밖의 재</u> <u>산권</u>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 3. 4. (생략)

<u>동산등인</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1. (현행과 같음)
2. 채권・유가증권・가상자산
<u>그 밖의 재산권</u>
3 • 4 (현행과 같음)